

울산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1268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11. 16.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6.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596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2015. 10. 12.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원리금(대출일자 2015. 10. 20., 대출금액 370,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333,000,000원, 보증기한 2016. 10. 11.까지로 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6. 6. 17. 소외 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원리금(대출일자 2016. 6. 17., 대출금액 194,000,000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164,900,000원, 보증기한 2021. 6. 16.까지로 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중 중소기업은행에 관한 약정은 그 후 보증기한이 2018. 10. 11.까지로 연장되었고 보증금액이 298,350,000원으로 감축되었다.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 부대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2019. 4. 1.부터는 연 8%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8. 10. 12.경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2. 31. 중소기업은행에 302,338,538원(= 원금 298,350,000원 + 이자 3,988,538원), D은행에 131,454,563원(= 원금 129,166,000원 + 이자 2,288,563원) 등

합계 433,793,101원(= 302,338,538원 + 131,454,56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미수위약금 및 법적절차비용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보증받은 자가 보증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원고가 변제하여야 하는데, 미수위약금 1,111,600원 및 법적절차비용 1,206,564원이 발생하였다.

라. 부동산의 처분

B은 2018. 4.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8. 4. 26.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596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B의 재산상태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적극재산>

순번	내용	금액(원)	참조
1	목록(울산 북구 E) 중 공유자지분 1550/9521	109,851,169	거래가, 갑 6
2	울산 북구 F, G 토지·건물	479,800,000	감정가, 갑 10-1~7
3	울산 북구 H 토지	168,720,000	
4	위 H 건물	1,977,800	

5	위 I 토지	159,840,000	
6	위 J 임야 198㎡	20,000,000	거래가, 갑 10-8
7	울산 북구 K 답 225㎡	18,450,000	공시지가, 갑 10-9
8	위 L 답 501㎡	41,082,000	공시지가, 갑 10-10
9	위 M 답 96㎡	17,000,000	거래가, 갑 10-11
10	경주시 N 중 806.5㎡	177,500,000	거래가, 갑 10-12
11	울산 울주군 O 중 1037.1㎡	360,000,000	거래가, 갑 10-13,14
12	위 O 건물 중 192.5㎡		
13	경북 청도군 P 임야 132㎡	1,597,200	공시지가, 갑 10-15
14	위 Q 임야 1914㎡	23,159,400	공시지가, 갑 10-16
15	밀양시 R 토지	44,180,000	감정가, 갑 10-17
16	합계액	1,623,157,569	

<소극재산>

순번	채권자	내용	금액(원)	참조
1	원고	대위변제원금	433,793,101	갑 4-1,2
2	S조합	잔존대출금	350,000,000	갑 10-7
3	T단체	2015.11.19. 대출	12,000,000	2021. 2. 22. X기관 회신서 3,7/9면
4	U조합	2014.09.04. 대출	20,000,000	
5	U조합	2012.12.07. 대출	10,000,000	
6	D은행	2014.02.28. 대출	1,080,845,000	
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4.11.27. 대출	384,600,000	
8	V회사	2017.05.04. 대출	9,541,000	
9	W회사	2014.07.17. 대출	19,760,000	
10	Y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20,000,000	갑 4
11	Z		150,000,000	
12	AA조합		156,000,000	갑 10-12
13	AB조합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625,000,000	갑 10-13
		합계금	4,471,539,10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9,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B의 재산을 조사한 2018. 10. 말경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2. 15.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103619 구상금 사건의 진행 중 2020. 3. 16.자 울산광역시 북구의 과세정보회신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2020. 12. 15.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B이 2018. 4.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B이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8. 10. 12.경 실제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당한 대금(5,000만 원)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B의 아들이고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소외 회사의 거래관계와 B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별 지 목 록

울산 북구 E

임야 9475㎡ 중

공유자 A 지분 9521분의 705.5

